



투 자 설 명 서

PCA

I-1

이 투자설명서는 PCA 중일 데일리 찬스 파생상품투자신탁 제I-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PCA 중일 데일리 찬스 파생상품투자신탁 제I-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투 자 신탁 명 PCA 중일 데일리 찬스 파생상품투자신탁 제 I-1 호
- 2. 자 산 운 용 회 사 명 PCA 투자신탁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전화번호: 02-2126-3500

- 3. 판 매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및 ☎ 1588-1770
상담가능전화번호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 4. 작 성 기 준 일 2007 년 2 월 일
- 5. 투 자 설 명 서 판매회사 본·지점 및
비차·공시장소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게시주소 www.kr.hsbc.com www.pcaasset.co.kr 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설명서 요약]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나. 연평균 수익률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 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2. 주요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97.5% 내외를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연계된 만기 3년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나머지 2.5% 내외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은행예금 등) 등으로 운용하여 투자신탁보수 등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은 해외 발행사와 직접 거래하여 투자됩니다. 따라서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파생상품은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서 거래와 관련된 해외시장의 휴장 등의 자체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파생상품의 가격제공이 지연되거나 또는 환매요청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가격 지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은 UBS (신용등급: S&P 기준 AA+, Moody's 기준 Aa2)에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중도환매 위험	동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의 평가기간 동안 기초자산가격에 연동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계약기간 내에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당초 예상한 수익 구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다른 유가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HSCEI) 및 Nikkei225 지수(이하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며, 기초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5단계의 투자위험 등급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장외파생상품의 수익구조를 이해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원금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그리고 투자기간이 최대 3년인 점을 고려하여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수준	상품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국내주식형, 해외 단일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2등급	높은 위험	인덱스형, 국내 및 해외주식혼합형 해외 복수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3등급	중간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혼합형, 파생상품형
4등급	낮은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형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5. 투자실적

해당사항 없음



. 매입·환매 관련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분의 1.5	
	후취 판매수수료	없 음	
	환매수수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환매금액의 3%	
	합 계	-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 6개월)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154%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461%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25%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6625%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 6개월 경과 이후)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25%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0675%	-

2. 과세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 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년 2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국내상장주식, 국내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내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매입·환매 절차 등

<매입> <매입방법>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을 신청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매입은 판매회사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고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설정시는 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환매> <환매방법>

환매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자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6 영업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하며, 수익자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7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환매수수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 환매금액의 3%



제1부 당해 투자신탁의 기본 정보

.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PCA 중일 데일리 찬스 파생상품투자신탁 제1-1호
- 2.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이전에 장외파생상품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상환금 입금일의 익일까지로 합니다.

◆ 최초 기준지수 평가일 : 2007.3.9

◆ 기초지수 평가일 및 상환금 지급일

평가시점	기초자산가격 평가일	상환금 지급일
1차 평가일 (6개월)	2007.09.03	2007.09.10
2차 평가일 (12개월)	2008.03.03	2008.03.10
3차 평가일 (18개월)	2008.09.02	2008.09.09
4차 평가일 (24개월)	2009.03.02	2009.03.09
5차 평가일 (30개월)	2009.09.02	2009.09.09
6차 평가일 (36개월)	2010.03.02	2010.03.09

* 기초 지수 평가일이 해당 기초지수 거래소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3. 종류 파생상품투자신탁, 공모형, 단위형, 개방형
- 4. 자산운용회사 PCA투자신탁운용(주)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3. PCA 중일 데일리 찬스 파생상품투자신탁 제1-1호 설정(예정)
- 6. 수탁고 추이 해당사항 없음
-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를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HSCEI 및 Nikkei225 지수(이하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연계한 만기 3년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97.5% 내외를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연계된 만기 3년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나머지 2.5% 내외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 (단기대출 및 은행예금 등) 등으로 운용하여 투자신탁보수 등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은 해외 발행사와 직접 거래하여 투자됩니다. 따라서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파생상품은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서 거래와 관련된 해외시장의 휴장 등의 자체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파생상품의 가격제정이 지연되거나 또는 환매요청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가격 지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은 UBS (신용등급: S&P 기준 AA+, Moody’s 기준 Aa2)에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중도환매 위험	동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의 평가기간 동안 기초자산가격에 연동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계약기간 내에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당초 예상한 수익 구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다른 유가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HSCEI) 및 Nikkei225 지수(이하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며, 기초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5단계의 투자위험 등급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장외파생상품의 수익구조를 이해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원금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그리고 투자기간이 최대 3년인 점을 고려하여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수준	상품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국내주식형, 해외 단일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2등급	높은 위험	인덱스형, 국내 및 해외주식혼합형 해외 복수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3등급	중간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혼합형, 파생상품형
4등급	낮은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형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5. 투자실적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나. 연평균 수익률 :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분의 1.5	
	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환매금액의 3%	
	합 계	-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초설정일로 부터 최초 6개월)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154%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461%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25%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6625%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초설정일로 부터 최초 6개월 경과 이후)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25%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0675%	-

<수익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1년차	2년차	3년차
수수료 및 보수·비용	239	246	25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임. 연간 투자수익률은 5%이며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환매여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2) 상기의 예시는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5%)를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년 2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국내상장주식, 국내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내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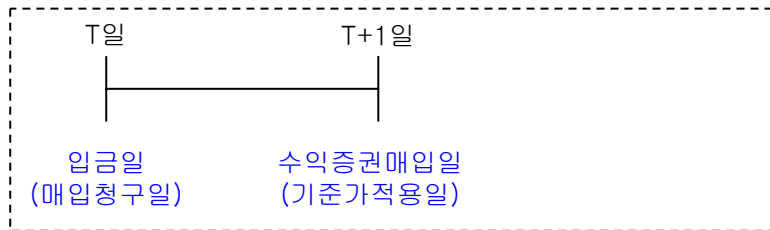
.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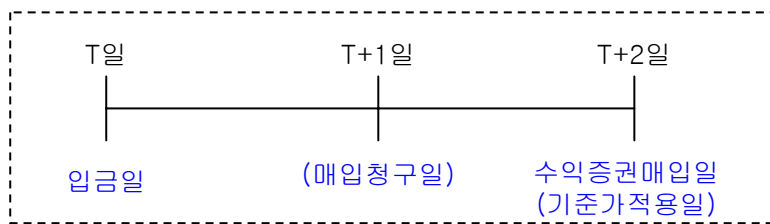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수익증권은 모집기간 동안에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을 신청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매입은 판매회사에서 해당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매입시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2) 오후 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주 1)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주 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 (3) 다만, 최초 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2. 환매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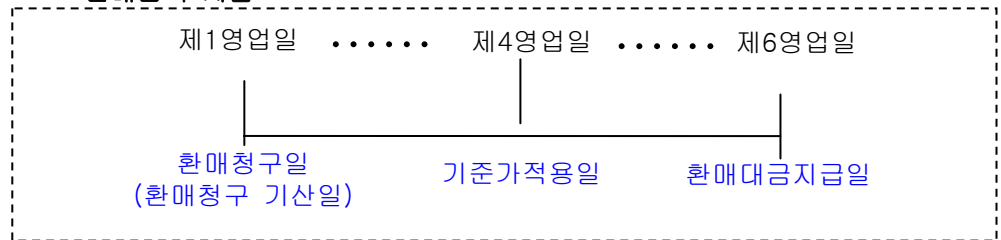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시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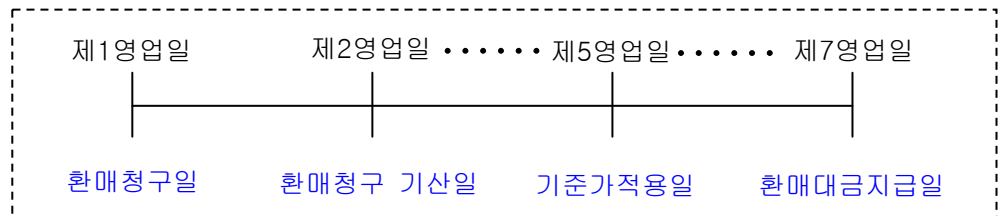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환매금액의 3%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4 영업일 전부터(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5 영업일 전부터)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환매연기>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현저한 거래부진,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천재 지변 등) 또는 수익자의 이익 또는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연기사유 및 수익자총회 등의 향후 처리계획을 지체없이 수익자와 판매회사에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통지합니다.

<부분환매>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와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고 판매회사는 통지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의 지급을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유보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97.5% 수준을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HSCEI) 및 Nikkei 225 지수에 연계된 만기 3년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운용기간중 총 6 번의 평가시점에 두 개의 기초지수 증가가 모두 최초 기준지수 대비 95% 이상인 경우 연 11%수준의 수익률로, 108%이상인 경우 연 22%수준의 수익률로 펀드를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합니다.

단, 평가시점에 두 개의 기초지수 증가가 모두 95%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운용기간 중 두 개의 기초지수 증가 모두 최초기준지수 대비 108%이상인 적이 있었던 경우, 가장 빨리 도래하는 평가일에 연 11%수준의 수익률로 펀드를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합니다.

만일 상기의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만기상환 수익률은 운용기간 중 장중 가격을 기준으로 두 개의 기초지수 모두 최초 기준지수 대비 35%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외파생상품의 주요 내용>

장외파생상품 발행사	UBS (신용등급: S&P 기준 AA+, Moody's 기준 Aa2)
장외파생상품기초자산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HSCEI) Nikkei 225 Index
장외파생상품 만기	3년 내외

◆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HSCEI) :**
2000년 1월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HSCEI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주식인 H-Shares 가운데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높은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중국기업지수임.

◆ **Nikkei 225 Index :**
도쿄증권거래소 1부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대표적인 225개 종목의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로서 Nikkei 225 Index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시가총액은 도쿄증권거래소 1부시장에 상장된 주식 시가총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임.

<장외파생상품의 손익구조>

◆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HSCEI) 및 Nikkei 225 지수에 연계된 만기 3년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운용기간 중 조기 또는 만기상환 조건 충족시 상환시기에 따라 5.5%~66%를 지급합니다.



평가시점	상환조건 (1)	상환 수익률 (1)	상환조건 (2)	상환 수익률 (2)	상환조건 (3)	상환 수익률 (3)
1차 평가일 (6개월)	평가일 시점 두 개의 지 수 증가 ≥ 기준지수 x 95%	5.5%수준	평가일 시점 두 개의 지 수 증가 ≥ 기준지수 x 108%	11.0%수준	평가일 시점 두 개의 지수 증가 ∠ 기준지수 x 95% 이면서 운용기간 중 두 개의 지수 증가 ≥ 기준 지수 x 108%	5.5%수준
2차 평가일 (12개월)		11.0%수준		22.0%수준		11.0%수준
3차 평가일 (18개월)		16.5%수준		33.0%수준		16.5%수준
4차 평가일 (24개월)		22.0%수준		44.0%수준		22.0%수준
5차 평가일 (30개월)		27.5%수준		55.0%수준		27.5%수준
6차 평가일 (36개월)		33.0%수준		66.0%수준		33.0%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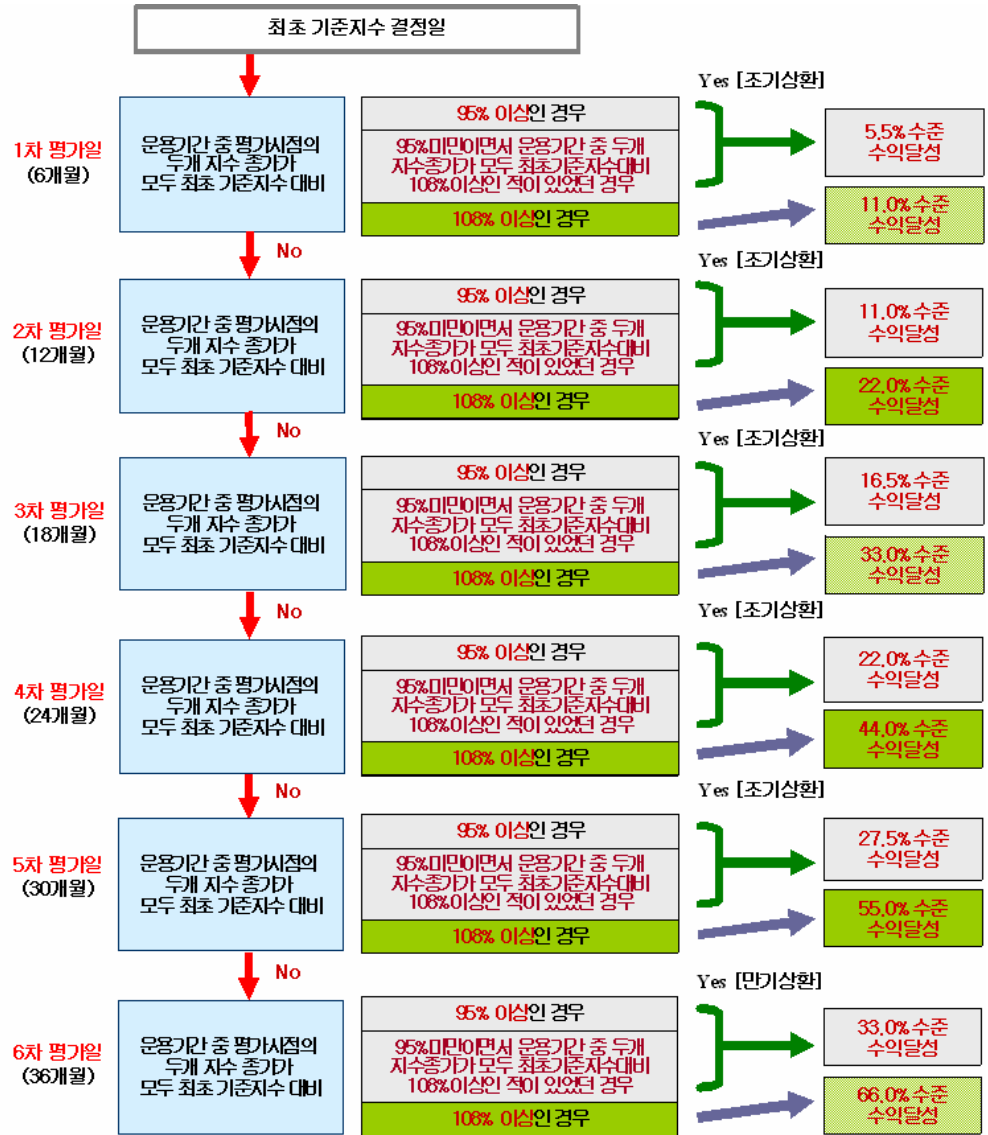
만일 상기의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만기상환 수익률은 운용기간 중 장중 가격을 기준으로 두 개의 기초지수 모두 최초 기준지수 대비 35%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운용기간 중 HSCEI 및 Nikkei 225 지수가 장중 가격을 기준으로 최초 기준지수 대비 35% 초과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 ▶ 만기상환금 = 투자원금 X 115%

- 운용기간 중 HSCEI 및 Nikkei 225 지수가 장중 가격을 기준으로 최초 기준지수 대비 35% 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 ▶ 만기시점 증가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익률의 기초지수(Worst Performer)에 대해 최초 기준지수 대비 하락률 만큼의 원금손실 발생
 - ▶ 만기상환금 = 투자원금 X (Worst Performer 최종만기지수/최초기준지수)



<펀드운용 Flow >



만일 상기의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만기상환 수익률은 운용기간 중 장 중 가격을 기준으로 두 개의 기초지수 모두 최초 기준지수 대비 35% 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 운용기간 중 HSCFI 및 Nikkei 225 지수가 장중 가격을 기준으로 최초 기준지수 대비 35% 초과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 만기상환금 = 투자원금 X 115%
- ◆ 운용기간 중 HSCFI 및 Nikkei 225 지수가 장중 가격을 기준으로 최초 기준지수 대비 35% 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 만기시점 증가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익률의 기초지수(Worst Performer)에 대해 최초 기준지수 대비 하락률 만큼의 원금손실 발생
 - 만기상환금 = 투자원금 X (Worst Performer 최종만기지수/ 최초기준지수)



2. 투자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은 해외 발행사와 직접 거래하여 투자됩니다. 따라서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발행회사의 채무상황 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파생상품은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서 거래와 관련된 해외시장의 휴장 등의 자체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파생상품의 가격제공이 지연되거나 또는 환매요청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가격 지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은 UBS (신용등급: S&P 기준 AA+, Moody's 기준 Aa2)에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중도환매 위험	동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의 평가기간 동안 기초자산가격에 연동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계약기간 내에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당초 예상한 수익 구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계약기간 내에 중도환매하는 경우 소정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므로 투자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다른 유가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의 환매에 대응하여 환매금을 마련하는 등의 사유로 장외파생상품을 만기 이전에 중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중도매각에 따른 가격 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기초자산의 수익률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펀드는 직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관련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환결제 위험	동투자신탁은 미국달러 표시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나 환헷지가 이루어져 있어 장외파생상품 투자기간 중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의 최초 매입 및 상환과정에서 미국달러와 원화간의 환전 거래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외환시장의 거래지연 및 연기, 폐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 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장외 파생상품	60% 이상	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HSCEI) 및 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 규모가 장외파생상품투자금액 이내인 구조를 갖는 장외파생상품
② 채권	10% 이하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③ 어음	10% 이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으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④ 채권관련장내 파생상품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선 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최초설정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 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행위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 (법 시행령 제 77 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5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한도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후순위채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장외파생상품	발행사가 제공하는 가격 및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간접투자자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전자공시
공시장소	판매사 각 영업지점 및 운용사,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PCA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타워 15층 연락처: 02-2126-3500
회사 연혁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 변경 2002.11 PCA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 변경 2004.07 제로인 선정 2004년 상반기 주식형 1위 운용사 2005.01 한경비즈니스 선정 2004년 결산 베스트 주식형펀드 운용사 부문 2위 2005.01 제로인 선정 2004년 결산 주식형펀드 운용사부문 2위 2005.12 머니투데이 베스트 펀드상 수상 -주식형펀드 베스트 운용사 부문

2. 주요 업무

<업무 범위>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무와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 위탁>

- 일반사무관리회사
PCA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는 수익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는 사모펀드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회계처리 및 자산운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2001년 2월 5일부터 “회계처리 대행 및 자산운용정보 제공 계약”을 통하여HSBC 펀드서비스에 위탁하고 있으며, 본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HSBC 펀드서비스에 해당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64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의 책임은 위탁한 자에게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의 요약재무내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06.03	2005.03	계정과목	2006.03	2005.03
자산총계	20,318	14,694	1. 영업수익	12,635	5,696
1. 유동자산	15,340	9,279	2. 영업비용	8,614	6,551
2. 고정자산	4,978	5,415	3. 영업이익	4,021	-855
투자자산	4,330	4,345	4. 영업외수익	1	112
유형자산	452	564	5. 영업외비용	6	7
무형자산	56	95	6. 경상이익	4,015	-750
이연자산	140	411	7. 특별이익	0	0
부채 및 자본총계	20,318	14,694	8. 특별손실	0	0
1. 유동부채	3,351	1,059	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015	-750
2. 고정부채	492	16	10. 법인세비용	1,159	-411
3. 부채총계	3,843	1,075	11. 당기순이익	2,856	-339
4. 자본금	15,000	15,000			
5. 이익잉여금	1,475	-1,381			
6. 자본총계	16,475	13,619			

4. 운용자산 규모
(일임자산 제외)

(2006. 12. 29 기준, 단위: 억좌)

				MMF			
	19,503	5,617	5,021	10,850	7,266	9,376	57.633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출생년도	주요 경력
김종원	1972	KAIST 석사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부 (03.1~05.11) PCA 투신운용 A.I 팀 (05.11~현재)

<운용전문인력의 기타운용 현황>

(2006. 12.29 기준)

성명	운용 구분	운용펀드수	운용자산(억좌)
김종원	공동	4	1,820
계	공동	4	1,820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연락처: 1588-1770
회사연혁	1981. 부산지점 개설 1984. 서울지점 개설 1986. 미들랜드은행 합병 1989. 자본 확충 1997. 자본 확충 1998. 삼성지점 개설 1999. 압구정지점 개설 2000. 분당지점 개설, 서초지점 개설 2001. 방배지점 개설 2002. 광장지점 개설 2005. 인천, 대전, 대구 지점 개설



2. 주요 업무

<업무범위>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의무와 책임>

-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 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 ②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⑤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⑥ 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 홈페이지 주소>

판매사	홈페이지 주소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www.kr.hsbc.com



.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연락처: 1588-1770
회사연혁	1981. 부산지점 개설 1984. 서울지점 개설 1986. 미들랜드은행 합병 1989. 자본 확충 1997. 자본 확충 1998. 삼성지점 개설 1999. 압구정지점 개설 2000. 분당지점 개설, 서초지점 개설 2001. 방배지점 개설 2002. 광장지점 개설 2005. 인천, 대전, 대구 지점 개설

2. 주요 업무

<업무범위>

- ①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의무와 책임>

-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HSBC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6층 연락처: 02-3771-9800
회사연혁	2000.03.23 설립



2. 주요 업무

<업무 범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당해 투자신탁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 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 간접투자자산의 신규계약, 추가납입, 일부 인출, 계약해지, 순자산가치의 산정, 순자산가치의 자산운용사, 판매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보 및 관련 회계처리자료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각목의 업무 외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서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운영에 관한 사무
- 간접투자자산의 계산업무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연락처	02-3770-0400	02-399-3350	02-739-3590
회사 연혁	2000. 06. 20 설립	2000. 05. 29 설립	2000. 06. 16 설립
	2000. 06. 29 등록	2000. 07. 01 등록	2000. 06. 29 등록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신탁회사·신탁기간·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③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④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②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①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수익자명부>

수익자명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해야 합니다
- ② 증권예탁원은 수익증권에 관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수익자 명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 나.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 다.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 ③ 증권예탁원은 수익자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위의 가 와 나 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의 가나다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소집절차>

- ①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신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 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www.amak.



or.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r.hs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r.hsbc.com)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장내·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자산운용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지표	설명	공시 주기
계약금액	파생상품 거래금액	파생상품 거래후 익일까지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손익이 발생하는 구간 설명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변동	시장가격이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매일

<수시공시 사항 확인 장소 및 인터넷 주소> 수시공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r.hsbc.com)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 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판매 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투자신탁의 경우 기초지수(HSCEI 및 Nikkei225 지수)가 하락하거나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의 계약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시까지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운용기간 중 두 개의 기초지수 가운데 단 하나라도 최초 기준지수 대비 증가 기준으로 40% 초과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만기시점에 두 개의 기초지수 중 수익률이 낮은 기초지수의 증가가 최초 기준지수 대비 50% 하락하게 되면 수익자는 투자원금 대비 50% 수준의 손실(하락률과 비례)을 얻게 됩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